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804
----------	-----

2021. 9. 14.(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1년 8월 25일

다. 회부일자 : 2021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9월 8일

-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연준 환경산림국장)

가. 제안이유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간사의 직위를 현행화하고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다변화하여 도민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직위 변경(안 제3조제1항)
 - 환경정책과장 → 업무담당과장
- 환경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납부기준과 일치(안 제5조제1항)
-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변경(안 제5조 제2항 및 제3항)
 - 수입증지 → 수입증지,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 안 제3조제1항은 「환경분쟁조정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부서가 환경산림국의 신설로 기존 환경정책과에서 기후대기과로 변경됨에 따라 간사를 환경정책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여 직위를 현행화 하는 사항임.
- 안 제5조제1항은 위원회의 알선·조정·재정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현재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규정과 같게 징수하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
- 안 제5조제3항은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기존 충청북도 수입증지에서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1. 7. 16. ~ '21. 8. 5.)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의 직위를 현재 소관부서의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 수수료의 납부기준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납부기준과 일치시키며, 수수료 납부방법을 기존 수입증지에서 현금,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하여 도민에게 납부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4
----------	-----

제출연월일 : 2021년 8월 25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의 직위를 현행화
- 환경분쟁조정 신청 수수료 규정을 중앙위원회 규정에 일치
- 수수료의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에서 다변화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간사를 '환경정책과장'에서 '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안 제3조제1항)
- 환경분쟁조정 신청 수수료에 납부기준에 관한 규정을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납부기준에 일치(안 제5조제1항)
- 수수료 납부방법에 대한 규정을 수입증지에서 다변화하여 현실화(안 제5조 제2항 및 3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중 “환경정책과장” 을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표와 같다” 를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증가전 수수료” 를 “증가전의 수수료” 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충청북도수입증지·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환경정책과장</u>이 된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수수료) 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u>별표와 같다</u>.</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u>충청북도 수입증지로</u>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 <u>수료</u>와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u>충청북도수입증지로</u> 납부하여야 한다.</p>	<p>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업무담당과장</u>이 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수수료) ① 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u>환경분쟁 조정법</u>」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u>규정에 의한다</u>.</p> <p>②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때에는 증가전 <u>의 수수료와</u> 증가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u>충청북도수입증지·현금·전자화폐·전자결제</u>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p>

관련법령 발취

□ 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환경분쟁조정법 시행령

제35조(수수료)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중앙조정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을 신청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③ 알선·조정·재정 또는 중재를 구하는 가액이 취지의 변경 등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④ 중앙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8.>

수수료 (제35조제1항 관련)

신청별	조정가액별 수수료
알선신청	10,000원
조정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1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5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10원을 더한 금액

원인재정	신청인 수에 20,000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책임재정 또는 중재신청	1. 조정가액 500만원 이하: 20,000원 2. 조정가액 5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제1호의 수수료에 5백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30원을 더한 금액 3. 조정가액 5천만원 초과: 제2호의 수수료에 5천만원을 초과한 10,000원마다 20원을 더한 금액
참가신청	1. 조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조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재정절차 참가신청: 해당 참가인의 조정가액에 대하여 재정신청의 수수료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
증거보전신청	5,000원

비고

1. 조정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500만원으로 하되, 추후 산정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그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제35조제4항에 따라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을 면제한다.